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97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이성권 · 이현승 · 김 건
강명구 · 김용태 · 안철수
정성국 · 조승환 · 조은희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 · 병역사항 · 체납실적 · 전과기록 · 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

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중 “候補者登録마감후”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候補者登録마감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65조제8항 전단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65조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발송한다.